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효력발생일 : 2014년 2월 10일

□ 정정 사유

1. 운용전문인력 변경 (김주형 → 김진성, 전효준)
2.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추가 (환매조건부 매수)
3.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조항 변경
4.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
5.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
□ 정정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안내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 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※ 변경전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‘ <u>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’이며, 변경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된 명칭(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)의 해당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	<삭 제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※ 변경전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‘ <u>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’이며, 변경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된 명칭(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)의 해당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	<삭 제>

	<u>으로 간주됩니다.</u>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2014.2.10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 조건부 매수 추가
5. 운용전문인력	<u>김주형</u>	<u>김진성, 전효준</u>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<u>2013.01.31</u>	<u>2013.12.31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김주형 : 2012.08.24~현재	<u>김주형 :</u> <u>2012.08.24~2014.02.09</u> <u>김진성 : 2014.02.10~현재</u> <u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</u> <u>-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<u>김주형 :</u> <u>2013.01.04~2014.02.09</u> <u>김진성 : 2014.02.10~현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, 투자대상	<u><신 설></u>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<u>8) 환매조건부 매수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%이하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(채권혼합형)에 투자하는 증권자집합투자기구(채권혼합형)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[채권형]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	<u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를 주식에 투자하고 국공채, 통안채 및 AA 이상의 회사채 등 우량채권에 70% 수준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(채권혼합형)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증권투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형 증권투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</u>

		니다.
		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변경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3)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	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<u>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</u>	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<u>판매할 수 없습니다.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u>주4)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	〈삭 제〉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2013.06.26	2013.12.26 기준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2013.06.26	2013.12.26 기준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2013.06.26	2013.12.26 기준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② <u>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.</u>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<u>4분의 1</u>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② <u>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.</u>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<u>5분의 1</u>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다

	<p>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</p> <p>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<u>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</u>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.)를 소집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</p>	<p><u>만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“간주의결권행사”라 한다.)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</u> <u>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</u> <u>3.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</u> <u>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</u> <p>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<u>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.)를 소집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</p>
--	--	--

	<p><u>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
	<p>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</p>	<p>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-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(<u>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</u>)</p>
	<p>(4)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</p>	<p>(4) 반대매수청구권 <u>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<u>②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</u></p>

		<u>수를 청구하는 경우</u>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. 손해배상책임	⑤ 해당 증권의 <u>인수계약을 체결한 자</u>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 신고 당시의 <u>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</u>	⑤ 해당 증권의 <u>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</u>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 신고 당시의 <u>매출인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	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<u>행사여부 및 그 내용(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)</u> 이 기재된 서류	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<u>행사내용 및 그 사유</u> 가 기재된 서류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	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-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<u>서면</u> 으로 표시한 경우	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-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<u>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</u> 으로 표시한 경우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- 신탁계약기간의 변경	-신탁계약기간의 변경(<u>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</u>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	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 - <u>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 - <u>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</u>

	<p><u>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: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<p>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u>주주총회일 5일전까지</u> 증권시장을 통하여 <u>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</u> 공시할 것 -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,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	<p><u>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<u>및 그 사유</u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u>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</u>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<u>의결권 행사 내용</u>을 공시해야 합니다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--	--	--